

**“영국의 배심제와 독일의 참심제를 통해 알아보는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과
법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목 차

I . 서론	2
1. 탐사배경.....	2
2. 팀소개.....	4
3. 탐사목표	5
4. 탐사방법.....	5
1) 구체적 탐사 준비 방법	
2) 해외 탐사 기관 선정 방법	
II . 본론.....	7
1. 국내사전조사	
1) 국민참여재판 참관.....	7
2) 이화여자대학교 성기용 교수님 인터뷰.....	8
3) 이화여자대학교 강동범 교수님 인터뷰.....	10
4) 학술논문 조사.....	12
A. 국민참여재판	
B. 배심제와 참심제	
2. 해외탐사.....	13
1) 영국의 배심제 및 법 교육 탐사.....	13
A. 영국 로스쿨 출신 Dr. Kyran 인터뷰.....	13
B. University of Brighton 교육현장 답사.....	16
C. 법조인 Andrew 인터뷰.....	17
D. 영국 의회(Parliament) 탐사.....	20
E. Royal Courts of Justice 외 2개 법원 탐사.....	21
F. Supreme Court 탐사.....	24
2) 독일의 참심제 및 법 교육 탐사.....	27
A. Dr. Michael from Munster University 인터뷰.....	27
B. Goethe University 학생들 인터뷰.....	30
a. Gauthier	31

b. Naz Mangit	31
c. Cindy Qu	32
d. Franzl Willy	33
C. Social Court Frankfurt am Main & Local court Frankfurt center 탐사.....	34
3. 결과물.....	35
1) 재학생 포럼 개최.	
2) 탐사 관련 교육자료 제작 및 배부	
3) 공식 블로그 운영	
4) 의회 및 국민생각함 제안	
III. 결론.....	37
1. 시사점 및 의의	
2. 국내 국민참여재판 모델 및 법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제시	
3. 시행착오 및 아쉬운 점	
IV. 참고문헌.....	40

I. 서론

1. 탐사배경

사전에 따르면, 국민 참여 재판이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를 뜻한다.¹⁾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주권주의를 사법기관에 보다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써,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작위를 통해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LAWCATION>팀이 국민 참여 재판을 주제로 선정하기까지 많은 의문이 있었지만, 가장 큰 선정 배경에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물음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을 위한 제도라면 국민이 잘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자연스러운 의문이었다. 팀을 선정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전부터 같은 독서토론 스터디원이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우연히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화제가 언급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모여있었다는 팀원들 사이에서도 국민 참여 재판은 단지 그이름만 낯설지 않을 뿐, 재판의 진행과정이나 배심원의 판결에 대한 효력여부는 매우 생소했다.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자, 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팀원들 사이에서도 생소한 ‘국민을 위한 제도’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실제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대중의 인식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해보았다.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응답 10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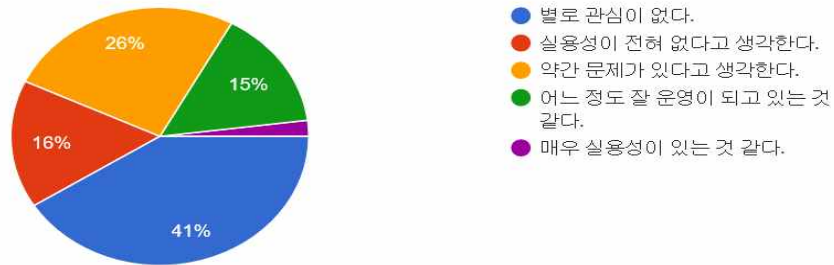


(그림1)

1)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어 “국민참여재판”, 접속일 2019.3.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69415&cid=40942&categoryId=31721>

3. 우리나라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응답 10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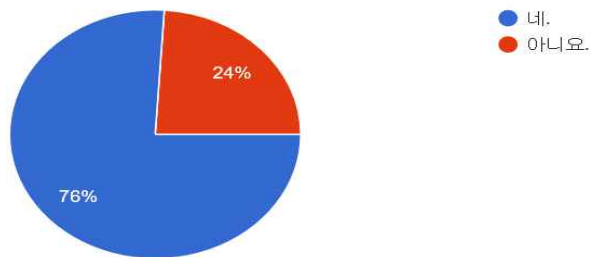


(그림2)

실로,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그림1)의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는 설문문항에 ‘자세히 알고있다’는 응답은 고작 4%. 심지어 이름만 알고있다는 응답 역시 무려 36%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2) 또한,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41%의 응답이 다수였다.

4.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100개



(그림3)

이에 비해, (그림3)의 물음에는 국민 참여 재판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76%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나자,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던 국민 참여 재판의 한계점이 뚜렷해 보였다. 가장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국민들을 위한 것임에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추가로 실시했던 주관식 설문 문항 역시, 홍보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짚고 있었다.

우리 팀은 조금 더 국민참여재판을 피부로 느끼기 위해 실제로 서울서부법원에서 열리는 국민 참여재판에 참여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은 매 달 평균 6~7회로 열리는, 상대적으

로 빈번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 결여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LAWCATION>팀은 자연스레 국민들의 법 감정 결여가 우리나라의 법 교육과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했으며,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법 교육이 현 우리나라 교육과정 상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에 대한 큰 결여성을 느꼈다. 이에, 우리는 법 교육의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국민 참여 재판의 형제적인 배심제, 참심제를 활발히 실시하고 있는 영국과 독일의 여러 기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 참여 재판과 그것들의 시행 방식을 비교하고 국민 참여 재판의 개선점을 탐색하여 이에 관련된 국민의 법 교육을 탐구하고자 하여 자교의 이화 글로벌 프론티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다.

2. 팀 소개

앞서 탐사배경에서 이야기하였듯, 우리 <LAWCATION>팀은 법에 대한 소소한 독서토론을 진행하는 소모임에서 시작하였다. 이에 대략적인 팀 소개는 탐사를 진행하며 유용하게 쓰였던 팸플렛으로 이를 대신한다.

2019 SUMMER EWHA GLOBAL FRONTIER 2019.7.4 ~ 7.16  LAWCATION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EWHA GLOBAL FRONTIER is an abroad study program designed to improve a challenging spirit, a driving force, and problem-solving ability required for global leaders. THEME - explore and experience German & British judicial system and law education - discuss how Korean judicial system(국민참여재판) can improve TEAM MEMBERS <table border="1"> <tr> <td data-bbox="801 1272 912 1415"></td> <td data-bbox="912 1272 1088 1415"> HOYOUNG KWON - International Studies </td> <td data-bbox="1088 1272 1200 1415"></td> </tr> <tr> <td data-bbox="801 1415 912 1559"></td> <td data-bbox="912 1415 1088 1559"> MINHEE SONG - Economics </td> <td data-bbox="1088 1415 1200 1559"></td> </tr> <tr> <td data-bbox="801 1559 912 1702"></td> <td data-bbox="912 1559 1088 1702"> YOO KYUNG EOM - International Studies </td> <td data-bbox="1088 1559 1200 1702"></td> </tr> <tr> <td data-bbox="801 1702 912 1845"></td> <td data-bbox="912 1702 1088 1845"> JIWON YUN - English Education </td> <td data-bbox="1088 1702 1200 1845"></td> </tr> </table>		HOYOUNG KWON - International Studies			MINHEE SONG - Economics			YOO KYUNG EOM - International Studies			JIWON YUN - English Education	
		HOYOUNG KWON - International Studies											
	MINHEE SONG - Economics												
	YOO KYUNG EOM - International Studies												
	JIWON YUN - English Education												

3. 탐사목표

LAWCATION의 탐사 대상인 ‘국민참여재판’은 해외의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합하여 변형된 모델로, 도입된 지 11년이 되어 현재 해당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을 두고 지속적으로 국회,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등에서 논의와 담론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을 비롯한 국민의 사법 영역에의 참여 확대 방안을 사회의 의식수준, 국가의 교육과 법률 시스템 등에 초점을 맞추어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참정권의 토대가 이루어진 유럽 국가 중 배심제와 참심제가 시작된 영국, 독일을 각각 방문 탐사하여 법조인, 배심원, 법대 교수 등의 관련 전문인과 사회의 구성원인 한인학생회를 직접 만나 국민참여재판과 법 교육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를 체험해보고자 한다. 또한, 각 국가의 배심, 참심재판을 참관하고, 법률 기관과 법률 교육 기관 및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그 사회의 법률 제도와 교육 과정 및 수준의 정도, 시민들의 의식 및 태도 등을 인터뷰하여 탐사 이후 국내에 실현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반영,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탐사방법

1) 구체적 탐사 준비 방법

: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영국의 배심제 그리고 독일의 참심제 공부하기

우리 팀은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논문을 찾아 읽고, 헌법 교과서를 읽으며 탐사준비를 시작했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형법과 관련된 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헌법에도 매우 적은 분량으로 실려 있었다. 공부를 해보니 우리나라 사법기관조차 국민 참여재판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기사를 읽어봐도 긍정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국민들의 낮은 참여율은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는 탐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였다. 물론 모든 대상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사법기관의 독재를 견제하고, 국민의 사법 참여를 독려하는 국민참여재판의 긍정적인 효과를 국내에서 키운다면 우리나라 사법기관 발전에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아가 우리 팀은 탐사를 준비하며 영국의 배심제와 독일의 참심제를 공부했다. 각자 맡은 분량을 나눠 관련 논문을 읽어보며 공부했고, 모르는 부분이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은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님께 직접 찾아가 여쭙보기도 했다. 이를 통해 배심제가 무엇인지, 참심제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확실히 정립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논문이 3년 전 논문이었던데다가, 과연 실제 재판 시에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하는지, 실제 법정의 분위기는 어떤지와 같은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알 수 없었다.

2) 해외 탐사 기관 선정 방법

: 기대효과 분석을 통한 기관 선정

주요 기관 및 주요 인물	방문 목적	기대 효과
영국		
Andrew & Law	영국 현지에 있는 법조 기관인 Andrew & Law를 방문하여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는 영국 변호사 및 자문위원분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함. 더불어, Andrew 변호사님께서 <LAWCATION>팀을 위해 준비해주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함.	법조계에 현재 직접 종사하고 계신 영국 변호사분들과의 면담 및 인터뷰를 통해 향후 탐사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음. 또한, 생생한 배심재판 후기 및 장단점 분석 등을 할 수 있음.
Mr. Kyran from LSE	영국 런던에서 법 계열 공부 및 졸업, 자격증 취득을 해온 분과 영국의 전반적인 법 교육 및 제도, 문화 등에 대해 다양하게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함.	탐사 목적 및 주제와 크게 연관된 분야인 영국의 전반적인 법 교육 및 시민의 법 수준, 인식 정도에 대해 자세히 인터뷰하고 알아볼 수 있음.
University of Brighton	University of Brighton에서 진행하는 학부생 대상 open day에 참가하여 특히 law와 관련된 학부 소개, 학부 체험 등을 직접적으로 해보고자 함.	런던 근교 대학 내 법 학부에서 진행되는 교육 수준 및 현황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체험, 알아볼 수 있으며, 해당 학교의 관계자분들, 학생들과의 친밀한 접촉을 통해 인터뷰가 가능함.
독일		
Dr. Michael	프랑크푸르트 근교 뮌스터 대학의 교수이신 Dr. Michael과의 인터뷰를 통해 독일 내 법 교육 정도와 수준, 체계 그리고 독일 lay judge system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해당 대학을 탐방하고자 함.	현지 교수님으로부터 독일의 참심제와 독일 법 교육의 체제에 대해 직접적인 질의응답 및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음. 해당 대학의 교육 환경과 수준 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음.
괴테대 재학생 Franz Willy 외 4~5인	현재 괴테대에 재학 혹은 교환학생으로 와있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에게 독일의 법 교육, 대학 내 법과 관련된 프로그램, 교육 등에 대해 전반적인 인터뷰와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임.	현지 학생들로부터 독일 내 법 교육 수준 및 시민의 법 인식 정도 등에 대해 생생하게 듣고 탐사 결과물에 반영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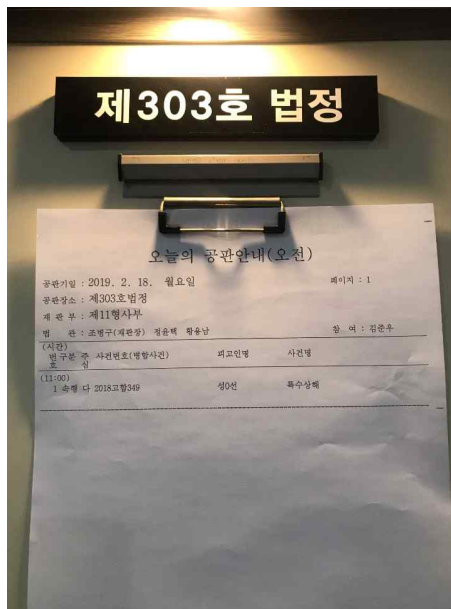
II. 본론

1. 국내사전조사

1) 국민참여재판 참관

우리 <LAWCATION>은 탐사 주제를 '영국의 배심제와 독일의 참심제에서 찾는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으로 잡은 만큼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잘 알고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LAWCATION>의 팀원 모두 평소 법 관련 이슈에 관심이 많고,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적 지식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현장을 공부해보지는 못했었다. 우리는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해보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2019.2.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했다. 제 11 형사부가 주관하는 재판이었고, 조병구, 정윤택, 황용남 법관님들이 참여하셨다. 사건번호 2018 고합 349는 특수상해사건이었다. 이론적 지식만 알고 있을 땐 머릿속에 재판의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직접 재판의 처음과 중간 과정 그리고 끝을 보니 추상적으로 머릿속에 있던 국민참여재판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다가왔다. 또한 글로는 느낄 수 없는 국민참여재판의 분위기가 느껴졌다. 배심원들이 고민하는 모습, 변호사들의 직접적 변호 그리고 검사의 발언 하나하나가 흥미로웠다. 실제로 우리가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해보니 직접적으로 느껴졌던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었다. 우선 첫째로, 국민참여재판의 방청자들이 극소수였다. 우리가 방청한 국민참여재판의 방청자도 6명 가량으로 매우 적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관심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이다. 더 나아가 법 자체에 대한 관심도로 볼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감정 고양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두번째로 배심원들의 숙련도이다. 배심원들은 무작위로 선정되고, 그 후 간단한 교육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과연 누군가의 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일이 간단한 교육만으로 준비될 수 있을까? 실제로 배심원들은 재판 중간 중간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표정을 자주 지었다. 우리가 사전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접근성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민참여재판이 방청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나서서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국가가 활발한 홍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한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광고를 본 적이 있는가? 비교적 최근 국민참여재판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고, 형사재판에서 적용되고 있는 현 시점, 국민참여재판을 올바른 길로 이어나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참여재판의 개념을 국민들에게 익숙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직접 재판을 방청하며 문제의식을 일깨울 수 있었고 더 깊은 공부를 위해 재판에서 만나 뵈었던 문제점 변호사님께 메일로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팀은 주제 탐사를 위한 구체적인 소탐구 주제들을 설정할 수 있었다.



(사진-국민참여재판이 열렸던 법원의 모습)

2) 이화여자대학교 성기용 교수님 인터뷰

국민참여재판을 다녀온 이후, 우리 팀은 이화여자대학교 성기용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성기용 교수는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로 헌법 관련 수업을 강의하고 계시며, “의회유보원칙에 관한 소고”,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에 관한 고찰 - 예외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와 같은 연구를 진행하셨다. 아래의 내용은 성기용 교수님과의 인터뷰 내용을 수기로 옮긴 것이다.

Q1) <LAWCATION>팀이 해당 주제로 해외 탐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에 있어 조언해주실 부분이 있나요?

A1) 우선, 국민참여재판 내에 합의부 재판과 같이 일부에 국한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판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을 기본적으로 아는 것과 그와 관련된 판례들 속에서 법과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화여대 도서관 학술 논문을 참조하고 배심제와 국민참여재판 등을 키워드로 하여 논문 기초 자료 조사를 선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영국, 독일 등과 같이 원활하게 배심제와 참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탐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해당 국가들의 방문을 통해 무언가 답사하고 배울 점이 있는 탐사를 준비하면 좋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국가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고, 배심제와 참심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를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우리나라의 사법 영역에의 국민 참여 정도가 저조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2) 이에 대해서는 국민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배심제는 형사제도이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이에 대해 간단히 다루고 넘어갑니다. 합의제 재판으로 국한이 되어 있다는 점과 그 효력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다는 점 등의 한계에 관해서도 국민이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의 불신과 재판이 피고인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아 제대로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단점 또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사법 영역에의 국민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들은 역사의 깊이가 깊지 않고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국민의 식에도 뿌리내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배심원제도가 과연 더 확대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고민도 필요합니다.

Q3) 우리나라의 사법 영역에의 국민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3) 우리나라 법 교육에 있어서 외국에 비해 시민과 정치 교육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민 정치 교육이 부족하기에 민주 시민으로서의 헌법에 대한 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는 민주 시민으로서 자질과 관련된 헌법, 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단순히 배심제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이므로 간접 민주주의 하에서 선거가 잘 되려면 어떻게 대표를 잘 뽑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고등교육과정에서 단순히 법과 정치와 같은 선택 과목을 수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헌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서 법과 법 교육에 관한 관심 정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Q4) 국민참여재판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4) 국민참여재판은 민주적인 제도로 민주주의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객체가 아니라 사법의 민주화와 관련된 중요한 주체로 관료화된 법관 집단에게만 판단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관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법관의 관료화에 대한 견제 장치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화여자대학교 강동범 교수님과의 인터뷰

강동범 교수님은 형사법전공/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강의하고 계시며, 오래전부터 사이버범죄와 경제형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 온 대표적인 학자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형법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현재까지 총 50여 편의 논문을 <형사법연구>, <형사정책> 등 등재학술지와 등재후보학술지 등에 발표하셨다.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의 편집위원장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의 상임이사 등을 거쳐 2012년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신다. 또한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형사소송법>, <형법의기본원리>를 포함한 법학 강의와 <죄와벌>이라는 법학 관련 교양 강의도 진행하고 계신다. 글로벌프론티어를 준비하며 인터뷰를 요청 드렸더니 인터뷰를 흔쾌히 승낙해주셨으며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Q1) 사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연도별 실시율은 10년간 약 1.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A1) 만약 사전 조사를 기사를 토대로만 진행하였다면, 대법원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간을 참고하면 더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수치가 모든 재판 중에서 집계된 것인지,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 재판 중 집계된 것인지 등에 대한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제도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사전조사를 해서 알고 있겠지만 피고인이 원해야 할 수 있으며, 여론의 우호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원하는 정도가 상이합니다.

Q2) 그렇다면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에 대한 의견의 근거는 무엇인지 여쭙어봐도 될까요?

A2) 가령 미국의 배심제는 일반인들이 온전히 참여하여 전적으로 그들의 기여도가 높은 편이고, 독일 혹은 일본의 참심제는 일반인과 직업법관/재판원이 함께 재판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배심제도가 도입된 게 동료에 의한 재판의 의미도 존재하는데, 아직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며 제도가 정착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자체가 어렵고 전문화되어 있는데다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감정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위해서는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태도를 국민이 가져야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다민족국가이기 때문에 혈연, 지연, 학연이 별로 없으며 다양성에 대한 인식도 높은 편입니다. 제가 자조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직은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Q3) 국민이 법 영역에서의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A3) 입법부에 대한 통제, 헌법소원 재판 등이 있겠지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면서 통제를 하는 것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민이 법원을 통해 기대하는 바는 자신의 권리,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삼심제로 자발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평가 시스템도 있고 법관도 십년마다 재임용을 하는 등 여러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독립이 통제보다는 우위에 있는 가치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국민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4) 배심원 교육을 포함하여 국민참여재판 및 사법 영역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 정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법교육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A4) 재판에 대한 공개가 원활히 되어 국민들이 법원 방청도 하고 요즘엔 절차가 많이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질서나 규범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범의식이 약한 사회 구성원이 존재하고, 법 관련 교육을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열된 입시 교육 보다는 공동체 의식의 주입이나 가정교육 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나 규범을 지키려는 일반인들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5)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사 합의부 중 일부 재판에 한정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으로 확대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5) 합의부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공정성과 객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과연 재판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보다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형량이 커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유무죄가 타협이 안되는데 민사재판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치더라도 손해배상금액의 차이에 있어서 타협점이 있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는 정도가 약간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은 일단 배심원에게 일당, 숙박비 등을 지급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사회적 비용이 큼니다. 배심제도가 과연 신뢰할 만한가의 문제가 또 존재하나 직접 체험하면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갖게 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재판의 과정에 직접 참여해보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전면적으로는 어려워도 국민참여재판을 확대 도입을 한다면 비용을 상쇄할만한 국민의 생각 형성과 같은 장점이 존재할 것입니다.

Q6) 배심원 교육을 포함하여 국민참여재판 및 사법 영역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 정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6) 역시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하며,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에 있어서도 그 법과 규정을 정확히 알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합니다. 법 자체에 대한 정확한 교육, 객관성과 공정성, 치우치지 않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학술논문 조사

A. 국민참여재판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영미법계의 배심제와 대륙법계의 참심제 요소가 혼합하여 우리나라만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만들었기에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용한 독특한 형태로 발전했다. 배심제의 요소로는 배심원의 평결은 법관의 관여 없이 이루어지는 점, 배심원이 표결을 하지는 않고 양형에 관한 의견만 개진하는 점이 있다. 참심제의 요소로는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반드시 법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점, 심리에 관여한 법관과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이루어진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지 않는 점은 수정된 배심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 특징을 자세히 보면 첫째,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의 사법민주화를 위한 최우선 정책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법, 행정 분야는 대의민주제에서 참여 민주제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국민참여재판법 시행 이전의 사법 분야에 있어서는 직업법관의 선출과정이나 기소 및 재판진행 전반을 볼 때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었다. 이에 사법영역은 직업법관에 의한 전문적이고 특수한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고, 일반국민은 사법 절차의 객체에 불과하여 재판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또한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과 행정부를 통할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어 짧은 임기동안만 권한을 위임받는데 반해, 법관은 국민의 선출이 아닌 시험을 통한 선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민주주의,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보다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기에, 국민참여재판 법은 사법영역에 국민의 참여를 꾀함으로써 사법민주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적법절차 원리, 실체적 진실발견 등의 형사소송법의 주요이념을 구현하여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과거에는 소위 '조서재판'으로 인해 법관은 법정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을 듣기 보다는 검사가 제출하는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조서, 변호사가 제출한 변론서면을 사무실에서 읽으며 판결하는 경향이 있었다. 때문에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불법 구금과 잔혹한 고문으로 자백을 받는 경우도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공판중심주의 원칙들이 그대로 지켜지는 재판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재판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이를 전파함으로써 과거의 조서재판에서 벗어나,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공판중심주의를 위한 전면적 개정을 촉구했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을 강화하는 사법의 선진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이 크게 기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²⁾

B. 배심제와 참심제

영국은 1166년, 국왕에게 예속된 법관들이 시민들과 함께 피의자를 고발·기소하는 ‘대배심(Grand jury, 기소배심)’제도를 시작으로, 일반인이 재판의 사실문제를 심판하는 ‘소배심(Petit jury : trial jury 심리배심 혹은 공판배심)’으로 분화되었다. 영국 배심제는 배심원의 수를 12명으로 하고 있으며, 유·무죄 인정절차와 양형절차를 구분하여 배심원에게 유·무죄에 대한 평결 권한을 주고 있다.

한편, 참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형사사건 뿐 아니라, 민사사건, 노동사건, 행정사건 등 모든 종류의 재판에서 국민을 참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법관과 행정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참심원선임위원회가 임기 4년의 참심원을 선출하며, 재판관은 보통 3명의 직업법관과 2명의 참심원으로 구성된다. 참심원은 재판과정에 있어 직업법관과 법률적으로 같은 권한을 갖는다. ³⁾

2. 해외탐사

1) 영국의 배심제 및 법 교육 탐사

A. 영국 로스쿨 출신 Dr. Kyran 인터뷰

Kyran은 영국에서 10년 동안 유학을 하며 BPP Law School을 졸업하였으며, 영국의 법을 다년간 학습하였다. 로스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PWC 회사 내 조세법과 재무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 영국 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직접 경험한 법 교육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인터뷰를 요청드리게 되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나눈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Q1) 영국에서 여러 해 동안 법을 공부한 영국 시민이자 전문가로서, 법에 대한 영국 시민의 인식과 참여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1) 일반적인 시민들은 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주로 TV나 신문과 같은 매체를 통해서만 뉴스를 보고, 본인이 직접 심화 학습을 하는 경우는 드물기

2) 박은진, 「국민의 사법참여정책에 관한 고찰 -살인죄 국민참여재판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6, pp.26-28

3) 위의 논문, pp. 21-22

때문입니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와 같이 이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만 전문적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는 British Citizenship Test을 보았는데, 이는 영국의 가치와 원칙, 역사, 사회에 대한 전반적 내용, 영국 정부와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법률에 관한 질문도 상당수 있다는 점에서 영국 사회는 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또한, 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2) 한국에서는 법률이나 법원 제도는 법률과 관련된 직업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깊게 학습하도록 합니다. 즉, 시민은 일반적으로 법이나 사법제도를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데요, 영국은 이 시스템과 어떻게 다른가요?

A2) 영국에서 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싶다면 대학에서 관련 수업을 수강해야 합니다. 법은 상당히 어렵고 전문적인 과목입니다. 위에서 말했듯, 사람들은 변호사나 판사가 되고싶지 않은 이상 법에 대한 깊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찾아보려하지 않습니다. 영국에는 백여개의 로스쿨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회는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Q3) 영국에서 학생들을 위한 법 교육이나 배심원 교육 제도가 존재하나요? 아니면, 영국에서 지내는 동안 대학교육 이외에 법 교육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A3) 영국에 있는 대학교들의 대다수는 3년제로, 여기서 법에 관련한 강의를 제공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에 맞추어서 경영에 관련한, 환경에 관련한 법 강의를 학습하기도 하지요. 대학교 이전에는 필수적인 법 교육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글쓰기나 독해와 같은 기술적인 학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대학교 오기 이전에는 전문적으로 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변호사가 될 생각으로 법 관련 과목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4) 학생들을 위한 의무적인 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법 교육이 어떻게 우리 사회나 전반적인 사법체계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A4) 전반적인 법 체제와 재판 과정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 배심원을 두어야할지 말아야할지 여러 말이 오가는 가운데 이런 논의는 기본적인 법과 재판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심제와 대중투표는 국민의 사법 영역에 관한 참여도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브렉시트에 관한 계속된 토론도 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영국이 미국과는 달리 헌

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법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면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Q5) 다음 Background Sheet는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5)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니, 올바르게 정착만 된다면 개인과 국가의 입장 모두에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judge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출신, 배경에서의 사람들을 선출하려 합니다. 배심원도 많은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다양성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6) 영국 국민의 사법 영역에서의 법 참여도를 1-10 중 점수로 매기신다면 몇 점 정도일까요?

A6) 3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법 참여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이와 같은 개선 방향은 여러 국가가 고민해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의 재판 참관을 할 기회는 열려있으니 여러분도 재판을 방청하여 탐사를 무사히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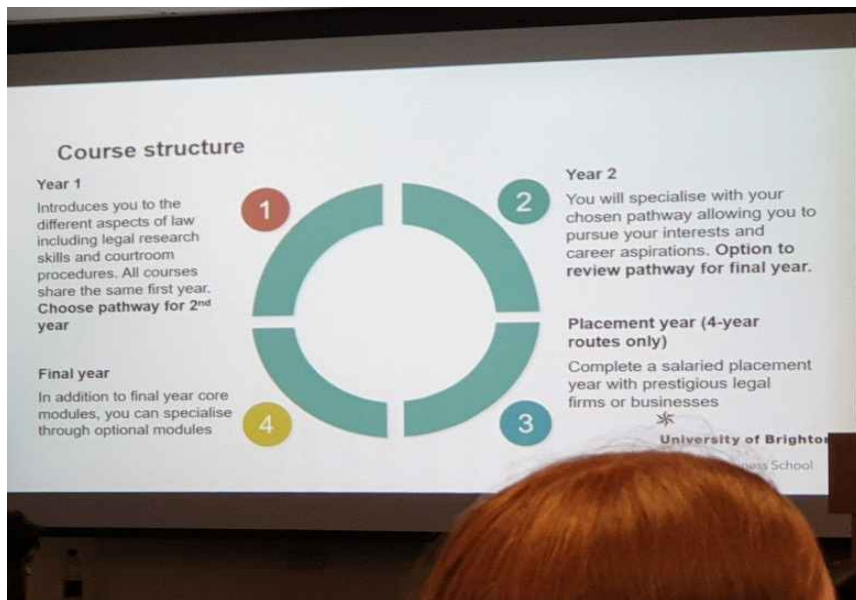
(사진-바람에 흔들린 <LAWCATION> 팀 현수막과 Dr. Kyran)

우리는 영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며 법 교육을 받아온 Dr. Kyran의 의견처럼 사회의 구성원이 더 나은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는 체계적인 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담론의 장을 구성하여 사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법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기위해서는 고등기관에서의 강의를 들어야하지만, 듣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법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B. University of Brighton 교육 현장 답사

우리 <LAWCATION>팀은 영국의 법교육 현장을 좀 더 생생하게 알아보기 위해 해외답사 한 달 전 Brighton University의 Open Day 일정을 알아본 후 이를 신청하였다. University of Brighton 은 브라이튼, 이스탄불 및 헤이스팅스에 소재한 5개 캠퍼스를 기반으로 한 공립학교이며, 대다수의 학위가 전문기관에 의해 인정받거나 전문 자격으로 이어지는 전문교육에 중점을 둔 학교였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브라이튼 대학의 교수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법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의 진로는 어느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이 대학에서 교육을 이수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법조계에서 일하게 되는 진로를 가지게 되는 셈이었다.



(사진-학생들이 이수하게 되는 Course Structure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이러한 코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자, 우리는 Brighton의 교수님과 함께 학생들이 듣는 강의실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University of Brighton의 학생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통해 생생한 법 교육 현장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었다. 실제 학생들과 함께 그들이 듣는 강의를 들으며 느낀 가장 큰 점은, 우리나라의 교육정책과 영국의 교육정책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첫째로, 우리가 딱딱하다 여기는 법교육의 현장조차 영국에서는 자유롭고 원활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토론과 토의를 통해 배움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두꺼운 책을 필수로 가지고 다녀야하는 우리나라의 교육과는 달리, 가벼운 유인물 몇 장이 한 시간이 넘는 수업의 전부였고 대부분의 이야기는 학생들과 교수님의 토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둘째, 우리가 갔던 University of Brighton의 경우 법대에서는 법에 관한 모든 것을 망라함과 동시에 법 교육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전공을 따로 마련해두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대는 존재하지만 법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전공의 경우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course structure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영국에서는 법대 뿐만 아니라 법 전공 안에서 법 교육 전공을 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법교육의 필요성을 절절히 느끼고 있던 우리에게, 영국의 법 교육 전공은 배워갈 만한 것임을 느꼈다.



(사진-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영국의 법교육 현장)

C. 법조인 Andrew 인터뷰

Andrew & Law는 영국의 한인변호사들이 한인밀집지역일뿐 아니라 한인들의 이민 역사속의 중심인 뉴몰든(New Malden)에 설립한 법률사무소이다. 우리말로써 충분히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영국의 한인 변호사들이 뉴몰든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영국에 거주하거나 영국과 관련된 모든 분들을 위한 변호사 업무를 한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영국 법원에서의 각종 소송과, 법률자문, 계약, 기업 설립, 기업 운영, 기업 폐쇄, 세금, 상속, 상업 부동산 구매, 임대, 고용, 비자, 난민, 이혼,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 <LAWCATION>팀이 만나 뵈었던 김인수 변호사님은 현재 Andrew & Law 변호사 사무실의 공동

대표로서 일하고 계시고, 기업법관련 소송과 세금, 지적재산권, 명예훼손 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다.

Q1) 영국의 전반적인 법 체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어떠한 다른 법체계가 존재하는지, 이러한 체계가 영국 배심제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A1) 영국의 변호사는 solicitor와 barristor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리시터는 사무변호사를 뜻하며 배리스터는 법정변호사를 뜻합니다. 배리스터는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를 향해 의뢰인을 직접 변호하고, 설리시터는 배리스터에게 법정 변호 시 필요한 자료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의 종류만 봐도 한국과는 참 다르죠? 또한 영국의 법은 equity : 양심법(행위를 막음)과 common law : 불문법(돈을 물어주기) 으로 나뉩니다. 특정한 법전이랄 것이 없기 때문에 앞선 사례를 통해 판결이 진행되죠. 법원 사용용어, 일상용어가 상이하여 일반인들은 영국 법률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영국의 사법체계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 기독교 사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넓은 땅을 혼자서 다스리기 어려웠던 왕은 기사들에게 땅을 주었고, 기사들은 평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며 살았습니다. 기사들에게 불공평한 일을 겪었던 평민들은 기사의 부패함을 왕에게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적정 교육을 받지 못한 평민들은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전달하기 힘들었죠. 따라서 주변에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을 수소문하여 돈을 주고 자신의 억울함을 왕에게 대신 전달하게 부탁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현재 영국 변호사 (배리스터)의 원조인 셈이죠. 왕과 주변 평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각자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오늘날의 영국 배심제와 닮아있다고 할 수 있죠.

Q2) 영국의 법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나요?

A2) 먼저 영국의 민사 법원입니다. 영국의 county court에서는 손해배상을 25000 파운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small claim만 가능하죠. 이는 10000 파운드 이하의 가벼운 사건을 말하며, 재판에서 지더라도 상대가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지 않습니다. 보다 높은 상급 법원은 high court입니다. 변호사 비용만 10만 파운드에 달하며, 재판에서 지면 상대에게 소송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이 곳에서는 카운티 코트와는 다르게 judge를 lord lady라고 부릅니다. circuit judge는 country court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재심을 청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appeal court에서 보통 판결이 나고 판례로 굳어집니다. 즉, 이전 기관에 의해 뒤집힐 수 없습니다. 영국 대법원 supreme court는 서류심사만 이루어집니다. 앞 선 재판에서 이론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를 판단하죠. 영국의 judge 는 전부 solicitor, barristor를 오래한 사람으로, 사회에서 덕망이 높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으면 여왕이 임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국의 형사법원입니다. 형사 중범죄(사기 살인 절도)를 저지른 당사자가 not guilty 주장한다면 그대로 majesty court로 갑니다. 만약에 guilty를 인정했다면 감형이 됩니다.

Q3) 영국의 배심원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3) jury는 40-50명을 교육해서 12명을 선정합니다. “ordinary people”이라는 조건 부합해야 하죠. 자기들끼리 재판에 대한 상의 및 토론이 가능하며 발설은 절대 금지입니다. 10명 이상 유죄임을 인정해야 guilty 판정이 납니다. 판사는 형량만 정하고 guilty/not guilty는 jury가 정하는 것이죠. 한국과는 다르죠? 따라서 영국 판사는 합리적인 역할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비교적 어렵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의 비리문제가 심각하기도 하고요.

Q4) 영국의 사법 환경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4) 영국은 국가차원의 복지가 잘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국민들이 부당한 일을 겪어 피해를 봤는데 이에 해당하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의회는 법률을 만들어내고 공표하여 실행시킵니다. 실행력이 매우 빠르죠. 이에 반해 한국은 법률을 등록하는데에만 엄청나게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국은 문제가 생기면 법안을 빨리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추진력을 배워야 합니다.



(사진-Court 견학을 도와주신 Andrew 변호사님과 <LAWCAUTION>팀)

영국의 사법체계는 중세시대부터 이어져온 역사 그 자체이다. 판례가 법안이 되고, 법안 제정이나 재판에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부분은 우리나라 사법기관들이 배워나가야 할 부분이다. 영국 국민들은 이러한 사법체계 속에서 나라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사법체계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참여하려 한다. 우리나라는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국민이 중심이 되는 법을 짚아 나가야 할 것이다.

D. 영국 의회(Parliament) 탐사



(사진-Parliament 앞)

영국의 의회는 최고의 입법 기관으로서 국왕, 하원 및 상원으로 구성되며 입법 행위를 위해서는 형식상 국왕과 하원 및 상원 3자의 합의가 필요하다. 영국에는 성문헌법이 없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의회에서 어떠한 종류의 입법도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며 사법부는 제정된 법을 심사할 수 없다. 실제로는 정당정치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서 의회는 입법 행위를 할 때 국민의 여론동향을 의식하며, 관습법(Common Law) 및 관례와 전통을 따른다. 영국 의회는 입법과 조세 승인으로 정부 운영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정부의 행정 및 예산 집행을 감독한다. 정부는 관습에 따라 중요한 국제조약과 협정을 비준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한다. 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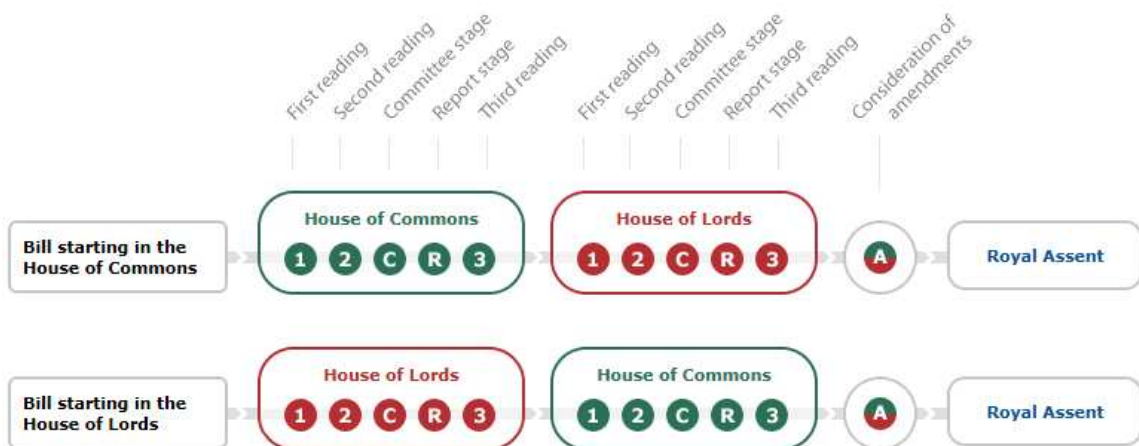
영국은 의원입법을 따른다. 이는 국회의원의 발안에 의한 입법형식이다. 정부가 발안한 정부입법과 대비된다. 영국은 제도상 모든 입법이 의원입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 영국의 경우 각료가 제출한 사실상의 정부입법을 공안법(public bill)이라고 하여 순수한 의원입법인 사법안

4)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어 “영국의 의회”, 접속일 2019.7.2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03122&cid=43899&categoryId=43900>

(private bill)과 준별하고 있다. 5)국민이 의회 홈페이지에 불만사항을 올리면 의회는 이를 검토하고 법 개정 필요 유무를 따진다.

영국의 입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법안(Bill)이 하원에 먼저 도달하면 상원을 거쳐 국왕의 승인을 받게 된다. 법안은 기존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법안일 수도 있지만, 기존 법의 변화를 촉구하는 제안일 수도 있다. 법안은 의회와 국왕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 아래의 그림은 영국의 입법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그림이다.

How does a bill become a law?



우리는 이를 통해 영국 의회의 법 제정 과정이 우리나라만큼 복잡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보다 손쉽게 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나라의 법 체계가 국민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영국과 같게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영국의 법 제정 과정이 완벽하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국민의 필요가 있을 때 그 요구를 검토하고 정당성이 입증된다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 The Royal Courts of Justice 외 2개 법원 탐사

The Royal Courts of Justice 는 왕립재판소라 불리는 곳으로 영국의 고등법원과 영국 웨일즈 항소 법원이 있는 건물이다. The Royal Courts of Justice는 영국을 포함하여 유럽에서 가

5) 네이버지식백과, 검색어 “의원입법”, 접속일 2019.7.25.,
<https://terms.naver.com/search.nhn?query=%EC%9D%98%EC%9B%90%EC%9E%85%EB%B2%95&searchType=&dicType=&subject=>

장 큰 법원 중의 하나로 외부 전경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와 운영 체계에 있어서또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해당 법원은 웨스터민스터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타 법원들과 유사하게 대중들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다.



(사진- The Royal Courts of Justice 앞에서)

우리 <LAWCATION>팀은 타 법원들에 앞서 해당 법원을 우선적으로 방문, 탐사하였는데 간단한 보안 검색 후에 법원 내부에 입장하여 법원의 시설과 운영 구조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재판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계획하여 방문하였기에, 탐사 당일 진행 중인 재판을 잠시 동안 참관할 수도 있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타 법원들의 재판 진행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The Royal Courts of Justice 만의 재판 특성과 양상들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재판 중의 판사와 변호사를 비롯하여 각 역할들의 특색을 느껴볼 수 있었다. 해당 법원을 탐사하며 김인수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The Royal Courts of Justice라는 명칭에 담긴 의미와 런던에만 있는 이 법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해당 법원에 이어 근처에 위치한 또 다른 법원들로 이동하여 런던 법원 탐사를 이어갔다. 앞서 설명한 The Royal Courts of Justice 법원 주변에는 Thomas More 빌딩과 Rolls 빌딩 등이 함께 위치하고 있었다. 여기서, Thomas More Courts는 Chancery division을 위한 12개의 courts로 1990년대에 시작하였다. 특히, The Thomas More Building 은 High Court나 Court of Appeal 에는 속하지 않는 개별적인 Country Court at Central London에 해당한다.



(사진-The Royal Courts of Justice에서 Central London County Court 에 가는 길에 위치한 THE LAW SOCIETY)

Central London County Court는 앞서 살펴본 The Royal Courts of Justice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또 다른 탐사 법원이었다. 이 법원 또한 내부에 들어가 보니 다른 법원들과 유사하게 로비 층이 이루어져 있었다. 해당 날짜에 해당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들에 대한 요약과 안내 사항이 정리된 게시판이 있었으며 이를 보고 진행 중인 재판을 찾아가 방청하기에 수월했다. 아동 청소년 문제나 가정 문제를 다루는 특수한 개인 정보 보호가 필요한 재판 외에 대다수의 재판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같이 개방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시간에 맞춰 여러 재판을 참관하여 둘러 볼 수 있었다.

참관 결과, 기본적인 재판의 진행 모습과 구조는 유사하였다. 재판 별로 다르게 드러나는 특징은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보였다. 재판 중 명예 훼손, 강도에 관한 재판, 행정 재판 등 다양한 부류의 재판을 살펴보았는데 그 종류에 따라 재판의 구성원, 배심원의 유무, 판사의 역할, 재판 진행 절차 등이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재판 내에서의 변호사의 전문화된 역할 또한 인상 깊었다. 검사와 변호사가 개인으로 재판에 참여하여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경중에 따라 여러 명의 검사와 변호사가 전문화된 역할로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참관을 통해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재판 또한 살펴볼 수 있었다. 배심제 또한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공통점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기본적인 재판 내의 구조와 배심원들의 위치 등은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었다. 배심원들은 기본적으로 재판의 진행과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안내를 받은 후 재판에 참여하였으며 판사의 허락 하에 메모를 하며 재판을 따라갈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하게 배심제의 공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취지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배심원들의 선정에 있어 법과 관련된 특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제외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영국의 배심제의 의의 그리고 취지를 이루는 가장 근간은 일반인들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의 중요성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영국이 배심제를 실행하여 온 것에 있어 가장 중시하였던 부분이 일반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에 대한 존중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F. Supreme Court 답사

우리 <LAWCATION>팀이 다음으로 탐사한 곳은 런던 내에 위치하고 있는 Supreme Court였다. Supreme Court는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같이 재판 단계에 있어 최종 단계를 맡는 법원으로, 영국의 법체계 발전에 큰 역할을 도맡아 해온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같은 방식으로 일정한 절차를 이전에 거친 재판들만이 Supreme Court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국의 Supreme Court가 맡는 주요 역할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그 첫 번째 역할은 영국에서의 민사 그리고 형사 소송에서의 일정한 절차를 밟은 사건들을 대상으로 그 최종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으로, 헌법적인 중요성이나 국민들에게 중요성을 지니는 사안을 다루는 재판들과 소송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에서의 가장 높은 법원 역할을 맡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그에 따라 Supreme Court 안에는 civil division과 criminal division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Supreme Court로의 탐사 과정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우선 Supreme Court는 타 법원들과 동일하게 일반인들에게 자유로이 개방이 되어있었다. 간단한 보안 검색 이후 내부에 입장하여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재판장을 비롯하여 Supreme Court 내부를 샅샅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타 법원들과 달리 지하에 일반인들의 Supreme Court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전시, 학습 공간을 따로 만들어 둔 점이 인상 깊었다. 따라서 우리 팀 역시 전시 공간에서 영국의 사법체계와 Supreme Court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해볼 수 있었다.

Supreme Court 자체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해보자면, 위 법원은 2009년에 영국의 의회와는 독립적으로 처음 분리되어 사법 체계를 세운 의의를 가진다. 소송 단계와 절차에 있어서 최상의 단계와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Supreme Court 자체의 중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보인다.

특히, 처음으로 외부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영국 의회와 사법 체계의 분리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Supreme Court가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영국 내 사법 체계와 의회 즉 입법부간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우선, 영국에서는 의회와 사법부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즉, 미국 혹은 프랑스와 같이 의회와 행정부 혹은 사법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와는 정 반대로 일정부분의 권력과 역할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인다. 결과적으

로는 2005년의 헌법적인 개혁을 근거로 지금의 Supreme Court가 처음 세워졌고 그 이후로 판사들의 혹은 사법적인 권력의 의회로부터의 분리가 실현되고 있다.



(사진-Supreme Court의 전시공간에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LAWCATION>팀)

2005년의 헌법적인 개혁이 있는 이후, 영국의 입법부를 구성하는 가장 큰 힘은 lord chancellor로, 이들은 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cabinet minister들이다. 이들은 더 이상 judge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게 되었으며, speaker of the House of Lords 의 역할에서 또한 물러나게 되었다. 반대로, 사법부를 이루는 가장 높은 힘은 the Supreme Court이다. 위에서 설명하였다시피 해당 법원은 영국의 대법원의 지위를 지니며 독립된 사법부 건물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영국 사법 체계와 Supreme Court 자체에 대한 지식 습득 외에도 Supreme Court 내부 견학을 통해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다. Supreme Court 내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이색적인 재판 공간과 재판의 양식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배심제를 포함하여 영국 재판 자체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2) 독일의 참심제 및 법 교육 탐사

A. Dr. Michael from Munster University 인터뷰

이후, 우리 <LAWCATION>팀은 독일로 넘어가 독일의 참심제 및 법교육을 탐사하기 위해 예정되어 있던 Munster University의 Michael Heghmanns 교수님을 찾아뵈었다. Munster University 법학과는 5000여 명의 학생을 둔 독일 최대의 로스쿨 중 하나이다. 졸업생들은 "gut" 또는 "sehr gut"의 우수한 성적으로 법학부에서 학업을 마치며, Munster University의 법학과는 유럽 및 비유럽 대학 및 연구 기관과의 수많은 파트너십을 맺어 연구와 가르침 뿐만 아니라 응용에도 큰 중점을 둔다고 한다. Munster University학생들은 독일법 석사과정(LL.M)으로 한 학기동안 법학 학습을 할 수도 있다.

Michael 교수님은 Institute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를 담당하고 계시며, Department of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Law, Criminal Media Law and Penitentiary Law에 속하신다. Munster University에서 감사위원장, 자문위원, 교수협의회 부위원장도 겸임하고 계신다. "Note to the judgment of the Federal Court of Justice (1. StrS) of 26.6.2018 - 1 StR 79/18 (special seizure protection in case of theft", "Defense in the Penal Enforcement" 외에도 다수의 책을 집필하셨다. 교수님께서 Munster University의 법 관련 강의와 독일의 전반적인 법 교육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주셨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Q1) 독일에서 법학 강의를 강의하는 교수로서, 독일 시민의 정도나 학생들의 인식과 법 참여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1) 제가 가르치는 대학생들을 기준으로 보면, 아무래도 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고 학습을 한 친구들이 많아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독일의 시민들은 이정도까지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에 대하여 아주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또한 법에 대해 공부하고 재판 과정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는 일반 시민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Q2) 한국에서는 법률이나 법원 제도는 법률과 관련된 직업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깊게 학습하도록 합니다. 즉, 시민은 일반적으로 법이나 사법제도를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데요, 독일은 이 시스템과 어떻게 다른가요?

A2) 독일 또한 법에 관련한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법 교육이 진행됩니다. 주

로 사람들은 책과 같은 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전문적인 학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훈련을 할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가령 의사가 되려면 그의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실습 기간이 주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법학 논문에 대한 접근은 법학 수업에서 용이하며, 저도 전문적인 정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전달하려고 강의를 합니다.

Q3) 독일에서 학생들을 위한 법 교육이나 배심원 교육 제도가 존재하나요?

A3) 네. 법학 대학이나 법학 관련 과가 있는 학교들은 학생들을 위해 법 관련 교육을 제공합니다. 저도 법학 교수로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법을 이해하기 쉽게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전공 저서 여러 권을 집필하였는데, 이 전공책 두 권이 최근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책입니다. 꼭 법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법에 대한 호기심만 있으면 강의 수강신청을 해서 제 수업을 비롯한 법학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Q4) 학생들을 위한 의무적인 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법교육이 어떻게 우리 사회나 전반적인 사법체계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A4) 법에 대한 심화된 학습을 꼭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특별한 실습이나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좋다는 말이지 만약 법 교육이 의무화 된다고 해도 큰 단점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Q5) 다음 background sheet는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법체계에 있어서 이런 시민의 역할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A5) 설명을 읽어보니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참여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 이름 말하듯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심제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장점과 위험을 둘 다 갖추고 있습니다. 배심원들은 감정적으로 사건을 다루기보다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합니다. 공정성만 잘 지켜진다면 재판의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6)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6) 제가 직접 재판을 참관해본 적은 없어서, 정확한 이유를 제가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하신 대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지 않고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실시율이 기대치보다는 낮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Q7) 독일 참심제에 비교해보았을 때,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이 더 발전하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7) 국민의 참여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이끌어내고, 재판관의 자질에 대해서도 검증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재판관이 수많은 사람을 대변할 수 있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하려 합니다. 자신이 이익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법 절차에 있어서 여러 측면을 고려한다면 더욱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Q8) 독일의 참심제가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8) 이제 독일에서는 재판관을 여러 번 맡을 수 있게 되었는데, 대표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자리를 맡는 상황을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정 집단만을 대표하여 공익을 뒷전에 두게 되면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발의 과정에서부터 신중하게 고려하여 시민 전체를 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사진-Munster University의 Michael Heghmanns의 오피스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LAWCACTION>팀)

B. Goethe University 학생들 인터뷰

괴테 대학은 유럽의 중심부에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대학으로 모든 전통적인 분야에서 학부 및 고급 학위를 제공한다. 괴테 대학의 학생들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세 곳의 주요 캠퍼스 위치에 200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으며, <LAWCATION>팀은 Westend 캠퍼스를 방문하였다.

괴테 대학의 법학 강의는 법률교육은 법률훈련에 관한 Hessian Law를 따라 제공된다. 법적 기본에 확고한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간학문적인 강의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특색이 있다. 마찬가지로 6~8학기 동안의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학생들은 정치적, 법률적, 사회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특성 등 사회적 변화의 맞추어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을 할 수 있다. 본교의 심화 전공과 비슷한 맥락으로 괴테 대학에서는 (1) 법의 국제화 및 유럽화, (2) 법과 금융, (3) 법률의 제정, (4) 헌법, 행정 및 규제, (5) 직장, 복지 및 가족, (6) 형사사법 등 6개 분야에서 심화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괴테 대학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 독일어로 수업하는 것 외에도 영어와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터키어와 같은 다른 언어들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언어와 법률 체계를 학습할 수 있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시킬 수도 있다. ERASMUS라는 언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 실력 향상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괴테 대학에 방문 학생으로 있는 김규리(과학교육과 17) 학생의 도움으로, ERASMUS 코스를 듣고 있는 네 학생들을 인터뷰할 수 있었다.

a. Gauthier : 프랑스인, 영상전공 master, 괴테대학 교환학생

b. Naz Mangit : 터키인, 영어교육전공, 괴테대학 교환학생

c. Cindy Qu : 중국인, 경영전공, 괴테대학 교환학생

d. Franzi Willy : 독일인, 괴테대학 아시아문화전공, 중국문화&한국문화
복수전공, 이화여대 어학당 학생

a. Gauthier 인터뷰

Q1) 한국 학생들은 선택적으로 법 교육을 고등학생 때 수강하게 됩니다. 본인 출신 국가 혹은 독일에서도 법 교육은 선택을 한 학생들에 한해서 이루어지나요?

A1)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살던 프랑스에서는 전반적인 사회 제도나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게 대학 이전에 학습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도 프랑스의 사회 규율, 재판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있는 상태이며, 교환학생 생활 중에는 법 관련 과목을 따로 찾아 듣지는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법원에 가 방문한 경험도 있습니다.

Q2) 다음 background sheet는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입니다. 설명을 읽으신 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견을 말해주세요.

A2) 프랑스에도 배심원제도 가 존재합니다.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배심원에 참여하라는 편지를 받게 되는데, 배심원으로 참여하면 회사나 직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는 회사가 아닌 나라에서 지불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국민이 삶에서 한번쯤은 배심원 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배심원 제도가 재판 결과 및 형량의 공정성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심원을 선택하는 과정이 임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읽어보니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이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는 영향력이 없어 보여 다른 국가들의 배심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역할이 적어보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배심원들의 권한을 키우면 국민들로 하여금 본인의 참여가 사법 절차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어 큰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3) 학생들이 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3) 법 교육을 하는 것은 좋지만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율성에 근거하여 본인이 법 교육을 더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열어두고, 아니라면 굳이 받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법에 대한 정보는 기존의 교육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 Naz Mangit 인터뷰

Q1) 한국 학생들은 선택적으로 법 교육을 고등학생 때 수강하게 됩니다. 본인 출신 국가 혹은 독일에서도 법 교육은 선택을 한 학생들에 한해서 이루어지나요?

A1) 한국 학생들이 사회 과목에서 제도와 규율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듯이, 터키 또한 사회 과목을 8학년 때 수강합니다. 이는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인데, 사회 과목의 일부분으로 법에 관련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지만 법의 세부적인 하위 항목이나 심화된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법에 관련하여 직업을 가지고 싶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대학에 가서 관련 강의를 수강하면 됩니다.

Q2) 독일에서 법 관련 과목을 수강해본 경험이 있나요? 혹은 법원에 견학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A2) 아쉽게도 저는 교환학생으로 독일에 한 학기 동안 방문을 하여 법 관련 수업은 수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괴테 대학에서 법학 쪽 강의를 많이 마련되어 있어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하면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독일의 시민들은 높은 법 준수 의식과 법 감정을 지니고 있는 듯합니다.

c. Cindy Qu 인터뷰

Q1) 한국 학생들은 선택적으로 법 교육을 고등학생 때 수강하게 됩니다. 본인 출신 국가 혹은 독일에서도 법 교육은 선택을 한 학생들에 한해서 이루어지나요?

A1) 한국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법 교육을 고등학교 때 수강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대학 전의 법 교육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학생들이 법에 관해 알고 싶어한다면, 중국에서 대학 전에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책을 읽는 것뿐입니다.

Q2) 학생들이 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2) 법 교육은 국가를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법이니만큼, 적정 나이부터 법에 대해 배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Q3) 다음 background sheet는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입니다. 설명을 읽으신 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견을 말해주세요.

A3) 저는 지금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을 처음 접했지만, 제가 보기에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은 감정적인 부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법 감정에 따라 혹은 재판을 진행할 때 의견이 강한 배심원쪽으로 의견이 몰리는 경향이 도드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재판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하므로 제도 자체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배심원이 될 국민들에게 법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 Franzi Willy

Q1) 다음 background sheet는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입니다. 설명을 읽으신 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견을 말해주세요.

A1) 배심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사람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재판의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독일)의 것과 유사해 보이기는 합니다.

Q2) 그렇다면 독일의 참심제와 이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2) 제가 독일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학교에서 독일의 참심제에 대해 교육받는 비중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텔레비전 속 프로그램에서나 가끔 보고는 합니다. 실제로 제가 느낀 바로는 제 주변 지인들도 잘 모르는 듯 하고, 체험해 본 지인 역시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화의 학생들이 말하는 국민참여재판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법 교육이 낮은 교육과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3) 독일에는 많은 법 교육 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법에 대한 지식이 공개되고 있는 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A3) 독일에는 많은 LAW SCHOOL 이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 고등을 포함한 낮은 교육과정에서 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으나 대학수준에 온다면 법 관련 전공도 많고 법 관련 교양 역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 관련 직종의 인기가 한몫 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진-괴테 대학 학생들과의 인터뷰)

C. Social Court Frankfurt am Main & Local court Frankfurt center 탐사

우리 팀은 이후 독일의 법원을 견학하여 독일의 참심제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기 위해 social court frankfurt am Main 과 Local court Frankfurt center를 함께 방문하였다. social court frankfurt am Main 과 Local court Frankfurt center는 우리나라의 지방법원에 해당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틀과 재판의 형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였다. 미리 시간을 알아보고 방문한 덕분에 social court frankfurt am Main 에서는 참심제 재판을 잠시 견학 할 수 있었는데, 배심원이 참여할 수 있는 재판을 형사재판으로 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참심제를 채택하는 독일은 민사사건, 형사사건, 노동사건, 행정사건 등 모든 종류의 사건에서 배심원을 채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놀라웠다. 또한, 국민 중 무작위로 선출하여 매 재판마다 달라지는 배심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과 달리, 독일의 참심제는 일반 국민 배심원 외에도 직업 법관제도를 도입하여 참심원 선임위원회가 임기 4년의 참심원을 선출하며, 이러한 참심원은 직업 법관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보통 배심원은 3명의 직업법관과 2명의 참심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이었다.

3. 결과물

1) 재학생 포럼 개최

<LAWCATION>팀은 탐사 이후인 2019-2에 직접 교내 ‘법사랑 클래스’를 학생문화관 소극장을 대관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 심포지움에서는 글로벌 프론티어와 법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 및 배심원을 통한 주권 행사, 우리나라의 사법 영역 참여 방안, 법 교육의 중요성과 의미 등 해외 탐사를 통해 뽑은 핵심적인 사안과 주제에 대해 <LAWCATION>팀이 직접 발표하고 학생들의 토의토론을 이끌어내는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나라 법 교육에 관련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봄으로써 <LAWCATION>팀이 해외탐사를 통해 얻은 결과물을 보다 많은 학부생들과 실질적으로 공유하고 현실적인 수준에서의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2) 탐사 관련 교육자료 제작 및 배부

<LAWCATION>팀은 국민들의 사법 영역에서의 참여를 통한 국민 주권 실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기초적인 법 지식의 함양을 도모하는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온, 오프라인 상으로 배포하였습니다. 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고, 관련 교수님들께 자문을 구하며, 온라인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영국, 독일의 배심원 교육 관련 자료를 찾아 분석해 본 결과, 교육 자료의 제공 범위와 구성 등 전반적인 측면에 있어 우리나라의 배심원을 비롯한 법 교육의 정도가 뒤처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국과 독일의 교육 기관을 비롯한 탐사 이후, 탐사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법에 대한 관심과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과 기초적인 법 지식을 다루는 교육자료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홍보물은 온라인상의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와 <LAWCATION>팀의 블로그를 통해 배포, 홍보할 생각입니다.

3) 공식 블로그 운영

<LAWCATION>팀은 탐사 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탐사 활동 및 정리 기간 내내 국민의 사법 영역에의 관심을 유도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할 공식 블로그를 개설하였습니다. 탐사 준비 및 해외 탐사를 통해 <LAWCATION>팀이 진행하고 얻어낸 결과물을 토대로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한 사법 영역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블로그에는 탐사 이후 탐사에 대한 설명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홍보, 배심원 교육 자료, 사법 영역에의 국민 인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보 관련 자료 게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게시물 업로드를 통해 학부생을 포함한 일반인들로부터 <LAWCATION>팀의 활동에 대한 투명한 피드백을 받고, 이후 <LAWCAITON>팀이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법 인식 및 관심 고취 방안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 참조, 반영하고자 합니다.

블로그 주소: teamlawcation.blogspot.com

4) 의회 및 국민생각함 제안

제안서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한계점을 짚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토대로 명료하게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전 조사 결과, 지금까지 국가나 공공 기관 차원에서 우리나라 국민 참여 재판 시행 이후 수차례 개혁을 하고자 하였으나 빈번한 입법 무산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담론이 형성된 적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AWCATION>팀은 대학생이자 시민의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보다 적합한 국민참여재판 모델을 만들어 제안서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LAWCATION>팀이 작성한 제안서를 공공기관에의 제출을 통해 사회 개혁과 국민 주권에 실현에 직접 참여해보고자 합니다. 사전 조사 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내 국민 참여 - 국민 제안 및 토론 마당에서 ‘민사재판에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화두로 국민의 제안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탐사 이후, <LAWCATION>의 제안서를 사법발전위원회와 같은 공공기관과 공유하여 보다 실질적인 사회 개혁이 이루어지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국민 생각함 제안: <http://idea.epeople.go.kr/idea/ideaView.do?ideaCd=190729-00059>



(사진-국민생각함에 의견을 게시한 사이트 캡처)

III. 결론

1. 시사점 및 의의

13일간의 영국, 독일 탐사를 통해 우리는 직접 두 나라의 법체계를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주요 대학의 교수님을 뵙고 다소 알팍했던 우리의 법 지식을 심화시켰다. 영국 배심제의 배경을 영국의 역사적 지식을 공부하며 이해했고, 독일 참심제를 직접 보고 우리나라와 다른 점에 대해 교환학생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나아가 사회를 이루는 기본 체계인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 법 교육이 두 나라의 법교육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았다. 13일 동안 우리가 쌓은 여러 경험들은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을 찾아가는데 단단한 토대가 되었다.

2. 국내 국민참여재판 모델 및 법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제시

먼저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개선점을 제도 자체에서 찾아보자. 우선 첫째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개념이 국민들에게 생소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한국 영화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영화의 소재로 삼거나 다큐멘터리의 소재로 삼는다. 하지만 이는 잠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뿐 사람들의 장기적인 관심을 끌어오지는 못한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참여재판이 방청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나서서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국가가 활발한 홍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가는 국민참여재판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느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지, 언제 열리는지, 이 제도가 불러올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국민의 활발한 참여가 있어야만 원활히 운영되는 제도임을 일깨워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 사회에 도입된 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즉, 아직 발전해나가고 있는 단계다. 국민참여재판을 올바른 길로 이어나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이 제도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로 배심원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다. 우리나라에서 법 교육을 제대로,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다. 법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재판 자체를 배우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짧은 교육을 받는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실제 영국 탐사를 통해 우리는 영국의 배심원들은 우리나라보다 탄탄한 교육을 받고 재판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국의 배심원들의 의견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발언이기 때문에 교육에 더욱 더 신중을 가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배심원들에게 사전 교육이 더욱 더 탄탄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교육 제도 또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앞서 말했듯이 법 교육의 기회가 매우 협소했다. 본인이 기회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교육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법감정은 점점 감소하고 이는 후에 사회 참여의 장애물이 된다. 우리가 탐사한 영국과 독일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들에서 법 내용을 다룬 사례가 많았다. 국민들에게 법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 법 교육을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 사회를 지탱하는 법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어야 사회는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나라 내에 법 교육과 사법 영역에서의 국민참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과 대안들을 생각해볼 수 있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법과 법 교육을 아우르는 사회적인 관심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영국 탐사를 통해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배심원 제도의 의의에 관한 것이었다. 영국이 배심제를 지금까지 실행해오는 가장 주된 목적과 의의는 일반인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판단의 중요성에 기반하고 있었다. 소수의 사법 집단이 아닌, 국가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 일반적인 대중들의 일반적인 사고가 우선시되는 것이었다. 영국의 배심제는 이러한 사고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었고, 그 결과 사법 영역에서의 국민 참여를 넘어 일반인들의 상식에 대한 존중과 진정한 주권의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단순히 사법 영역에서의 국민 참여를 도모하는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시켜 국민들의 사법 참여와 견제 등의 목적을 이루는 것 또한 의미가 있지만, 그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실행의 진정한 목적을 수립하고 그 역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에 대한 존중 그리고 국민의 법에 대한 관심 제고가 동시에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사법 영역에서의 국민 참여를 사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 혹은 국민 주권 실현의 의미를 넘어 정치와 법 영역에서의 대중과 대중적인 생각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다가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민 또한 법의 중요성과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회에서 자신의 주권을 펼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학습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서는 법과 법 교육, 즉 법을 우리의 삶속에서 접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넓고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과 독일, 양국 탐사를 통해 인상 깊게 느꼈던 또 다른 부분은 법에 대한 교육, 즉 법의 접근성 정도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평등하고 개방적이며 자유롭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듯이 법 교육은 의무 교육과정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며 대학 교육 과정에서 또한 법은 해당 진로를 계획하는 학생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특수하게 이루어진다. 이는 법이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 특수하고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접근 용이한 것으로 풀이해볼 수 있다. 반면, 영국 그리고 독일에서의 법은 사회 소수 혹은 특수 집단만의 해당사항이 아니었다. 의무 교육 과정에서 정치와 법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 그리고 개방적으로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일정 수준의 법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 수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보다 법에 대한 교육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누구나 법에 대한 교육을 원하면 보다 적은 제한 속에 다양한 법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전공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며 심화된 교육까지 이수하여 법에 대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법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법을 대중들이 접하고 배울 기회가 적음을 드러내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이 법과 법 교육 자체에 대해 접근의 어려움을 가지고 그만큼 법이 특정 소수 집단의 전유물이 됨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진정한 주권 실현에도 유해한 것이므로, 법과 법 교육에 대한 문이 보다 많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열리는 것이 필요하다

다고 보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사법 영역에의 국민 참여 그리고 법 교육을 큰 주제로 영국과 독일을 탐사한 후 내린 결론은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이상으로 국민의 사법 영역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진정한 국민에 대한 존중과 주권 실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과 정치 참여에 있어서 제도 변화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 시행착오 및 아쉬운 점

<LAWCATION>팀은 영국과 독일의 주요 법원들을 견학하며 탐사를 진행했다. 각 나라의 법원을 견학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있었다. 우선 첫째로 법원 내부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였다. 법원의 내부 모습과 구조, 그리고 내부의 안내판 등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 팀이 보고서에 넣을 수 있었던 유일한 법원 관련 사진은 입구 사진 뿐 이었다. 또한 둘째로 법원의 운영시간이다. 구글맵에 적힌 법원들의 운영시간이 실제 운영시간과 다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독일 법원을 견학할 때 많이 나타났다. 특히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일정이 없을 시 문을 닫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견학 전에 전화로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재판 일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다. 몇 달 전부터 탐사 계획을 짜려했지만 법원 공식 안내사이트에는 일정이 일찍부터 게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단기간 내에 촉박하게 짤 수밖에 없었다. 기존에는 재판 이후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재판 참관 자체도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일정을 소화해야했기 때문에 인터뷰 컨택은 따로 진행하게 되었다.

독일 주제 탐사 과정에서 도시간의 먼 거리는 우리가 다채로운 일정을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었다. 약 13일간의 일정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꼽으라면 단연 독일 뮌스터 지역의 탐사 일정을 꼽을 것이다. 우리가 방문한 뮌스터대학교와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숙소는 플릭스버스로 약 6-8시간이 걸리는 아주 먼 거리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새벽 1시에 버스를 타야했고 숙소로 돌아올 때도 이른 오후에 출발해야 했다. 오후 1시에 뮌스터대학교에서 인터뷰 일정을 마친 후 우리는 돌아가는 버스 시간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의 다른 탐사 일정을 소화할 수가 없었다. 만약 버스 대신 ice기차를 타거나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있어 숙소를 이동했다면 독일에서 조금 더 다양한 탐사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을 것 같다.

<LAWCATION>팀은 재학생 포럼 개최를 포함하여 탐사 관련 교육자료 제작 및 배부, 공식 블로그 운영, 의회 및 국민생각함 제안을 하여 결과물을 선보였다. 결과물 제작과 탐사를 병행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탐사를 하는 내내 견학 및 인터뷰 준비와 정리를 하느라 바빴지만 시간을 더 쪼개서 포럼을 구상하거나, 공식 블로그 게시물 업로드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 지었더라면 탐사 이후 부담이 덜 했을 것이다. 또한, 탐사 초기에 국민참여재판 모델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으로 결과물 목표를 잡은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탐사를 진행하며 우리 <LAWCATION>팀은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 문제점의 원인이 되는 법교육과 연결을 짓고 개선 방향을 짚어나가며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IV.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참여재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69415&cid=40942&categoryId=31721>

네이버지식백과, 검색어 “영국의 의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03122&cid=43899&categoryId=43900>

네이버지식백과, 검색어 “의원입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41028&cid=46625&categoryId=46625>

논문

박은진, 「국민의 사법참여정책에 관한 고찰 -살인죄 국민참여재판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6, pp.21-28.

별첨1. 인터뷰 요청 이메일 양식 (예시)

Dear Dr. _____

Warm greetings from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wha Womans University is one of the most prestigious research universities in Korea and the largest women's university in the world, with 14 colleges and 15 graduate schools, offering 76 majors including Engineering and Medical School. Since its founding in 1886, Ewha has continued to provide women with a stepping stone to the future and the world, while caring for all humankind and striving for justice and equality throughout its 130-year history.

The Office of Student Affairs has designed and promoted 'Ewha Global Frontier Program' since 2013. It is a short-term abroad study program designed to improve a challenging spirit, a driving force, and problem-solving ability required for global leaders. The selected participants are required to establish their own research topic and itinerary, and carry out research on it by visi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overnment agencies, global companies and universities for about 2 weeks.

One of the selected participants, the team "LAWCATION", greatly wants to conduct their research as below.

1. The Participants (Team Name: LAWCATION):

	Name	Major	Grade
1	KWON HOYOUNG	International Studies	2
2	SONG MINHEE	Economics	2
3	EOM YOO KYUNG	International Studies	2
4	YUN JIWON	English Education	2

2. Theme: To explore United Kingdom's overall ways of judicial system and education on law

3. Itinerary: July 4 – July 16,

July 4 Departing from Korea

July 5-8 Stay in UK

July 9-14 Stay in Germany

July 15-16 Returning to Korea

4. Expected Date of Visit:

5. Expected Activities

- 1) Brief introduction of the department of law in the university
- 2) Interview about the British/German judicial system and overall education on law
 - The kinds of the lectures or classes your university provides
 - How the British/German judicial system is going
 - The kinds of the judicial system citizen can participate with
- 3) Brief interview with undergraduates who are in the major of law (not mandatory)
- 4) Guided Tour (not mandatory)
- 5) Photo Time

Therefore, we would respectfully request to give a chance for our team to visit your organization and have a good experience.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time and consideration and I sincerely hope for your help and offer.

Best Regards,
Team LAWCAUTION

Background information for Interviewees

Team LAWCAUTION

1. About '국민참여재판', Citizen Participation Tribunal system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bunal system is a unique system in Korea that flexibly blends and modifies the two systems which are **the jury system** and **the trenchant system**. In principle, a jury should reach a unanimous verdict after a review without the involvement of a judge. If a jury fails to reach a unanimous verdict, it can hear the judge's opinion and then reach a majority verdict. A jury can discuss the modality with the judge involved in the hearing, but not participate in the decision of a sentence through a vote, and a jury's verdict has the power of judgment without recommending the court.

The jury, which is composed of the general public, will stand on trial, independent of the professional judge, and the judge will decide whether to uphold the verdict or not, and the jury is in effect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elsewhere.

The trenchant system is applied in Germany, France and other nations as a system under which the ordinary people, the lay judge, participated as a member of the court along with the vocational court to determine facts and legal issues with equal authority to the vocational court.

2. About Law Education in Korea

At the middle school level, the contents of the law are mainly covered in moral and social textbooks, (moral and social subjects are common subjects). A moral textbook is divided into 'moral 1' and 'moral 2', and a social textbook is composed of 'social 1' and 'social 2', which means that students in middle school will study first and second textbooks separately for 3 years. Although both moral and social textbooks have expanded the scope and depth of legal education compared to elementary schools, they need a supplementary explanation for the reason and background because they simply explain the basic concepts.

High schools in South Korea divide students' study courses into 'science course' and 'literary course'. If you choose a science course, you will not be able to access social education. One of the social studies subjects is 'law and politics', but the law and political subjects have too much content to study and do not include the content of life laws closely related to students.

At the university level in Korea, students who do not entered law schools in universities have few opportunities to receive "legal education." You can only receive legal education if you apply for a legal education class by yourself. For example, in Ewha Womans University, liberal arts classes are divided into four areas, and law classes are part of society area which is one of the four areas. In other words, law education is not treated seriously in the university level in South Korea.

별첨3. <LAWCATION> 팀 현수막 및 팸플렛 도안



2019 SUMMER EWHA GLOBAL FRONTIER 2019.7.4 ~ 7.16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EWHA GLOBAL FRONTIER is an abroad study program designed to improve a challenging spirit, a driving force, and problem-solving ability required for global leaders. THEME - explore and experience German & British judicial system and law education - discuss how Korean judicial system(국민참여재판) can improve TEAM MEMBERS <table border="1"> <tr> <td data-bbox="810 1122 927 1279"></td> <td data-bbox="935 1122 1118 1279"> HOYOUNG KWON - International Studies </td> <td data-bbox="1126 1122 1243 1279"></td> </tr> <tr> <td data-bbox="810 1301 927 1458"></td> <td data-bbox="935 1301 1118 1458"> MINHEE SONG - Economics </td> <td data-bbox="1126 1301 1243 1458"></td> </tr> <tr> <td data-bbox="810 1480 927 1637"></td> <td data-bbox="935 1480 1118 1637"> YOO KYUNG EOM - International Studies </td> <td data-bbox="1126 1480 1243 1637"></td> </tr> <tr> <td data-bbox="810 1659 927 1816"></td> <td data-bbox="935 1659 1118 1816"> JIWON YUN - English Education </td> <td data-bbox="1126 1659 1243 1816"></td> </tr> </table>		HOYOUNG KWON - International Studies			MINHEE SONG - Economics			YOO KYUNG EOM - International Studies			JIWON YUN - English Education	
	HOYOUNG KWON - International Studies												
	MINHEE SONG - Economics												
	YOO KYUNG EOM - International Studies												
	JIWON YUN - English Education												

별첨4. 인터뷰 질문지 (예시)

2019 EWhA SUMMER GLOBAL FRONTIER

Interview Questions for Dr. Michael Heghmanns

Team LAWCAUTION

Once again, thank you for receiving our sudden request for an interview. We are Kwon Ho-young, Song Min-hee, Eom Yoo-kyung, and Yoon Ji-won from Ewha Womans University in South Korea.

We would like to ask you some questions based on our exploration topic which is to find out a way to improve the current state of the Korean ‘citizen participation tribunal,’ a kind of civic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compared with the British jury system and the German lay judge system. To be more specific, we are going to research how the German institutional and educational system have been developed and have influenced people differently from ours and finally have affected citizens’ participation in judicial systems. You can get some rough information about Korean circumstances through the research paper we sent to you via email separately.

The following contents are the interview questions for you.

1. As a German professor who have taught law to students for many years in Germany, what do you think about the degree of German citizens or students’ perception and participation on law?
2. We have a question about accessibility to the law in general. In Korea, laws or court systems are only taught to people who pursue professions related to law. In other words, public citizens do not commonly get a chance to learn about law or judiciary system. How is Germany different from this system? And what policies/campaigns are done to help people access to the law?
3. In the Korean education system, students can get some legal education in middle school, and if you are in high school, you can study legal knowledge only by choosing the specific subject. According to the Korean high school education system, if you choose a science course, you will not be able to learn about the law unless you study yourself with interest. Unlike this, is there any student law education or jury education system that is pursuing in Germany?
4. Do you think that fundamental or mandatory law education for students are needed? If then, how could the fundamental legal education contribute to our society or overall judicial system?

5. As we mentioned briefly in the research paper, Korean 'citizen participation tribunal' has both British jury system and German lay judge system's attributes. One thing the lay judge system and ours have in common is that jury (citizen) has a role to decide the degree of punishment or the period of sentence. What do you think about the significance of this kind of citizen's role in the judicial system?
6. In South Korea, the ratio of 'citizen participation tribunal' stands at about 1.5 percent which is noticeably low due to non-recommendation, lack of government publicity, unfairness of judges and costs issue. What do you think the biggest reason for the low rate of implement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trial'?
7. Based on the current implementation of the German lay judge system, is there any recommendation or comments for Korea to successfully promot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ystem to the public?
8. Do you think there are any problems of the German lay judge system to be solved? (Either for jury system or the court system in general.)

Thank you so much for your efforts to give a big help to our team LAWCAUTION's project.





Friday 5th July 2019

QUEEN'S BENCH DIVISION

COURT RECORD FORM

Parties are asked to complete and hand to the Master at the commencement of the hearing a Court Record form which includes a note of the names of counsel or solicitors appearing before the Master and the nature of the application being made. Solicitors are reminded that it is customary to inform their opponents in advance when they have instructed counsel to appear at any interlocutory hearing.

PAPERS FOR MASTER'S HEARINGS

The Court File in cases proceeding before the Masters will not be placed before the Master. Parties wishing for it to be produced should notify the Queen's Bench Issue & Enquiries Section in Room E07 five clear days in advance of the appointment. In all other cases parties should bring with them copies of any filed documents upon which they intend to rely.

Bundles for hearings should be lodged with the Masters' Usher in the Bear Garden at least 3 working days before the hearing.

TELEPHONE CONFERENCE HEARINGS

This cause list does not indicate whether your hearing is to be held by telephone, please refer to your notice of hearing.

APPLICATIONS BEFORE QUEEN'S BENCH MASTERS

ROOM E118

Before MASTER GIDDEN

At half past 10

Clerks Walk In

At 11 o'clock

Baker v Dorset Police

At half past 11

Bush v O'Neil and Brennan Construction Ltd

APPLICATIONS BEFORE QUEEN'S BENCH MASTERS

ROOM E117

Before MASTER BROWN

At 2 o'clock

Clerks walk in

South

At half past 2
Applications

PROCEEDINGS BEFORE QUEEN'S BENCH MASTERS
ROOM E101
Before MASTER FONTAINE, SENIOR MASTER & QUEEN'S REMEMBRANCER
At half past 10
Official Court Business

At 2 o'clock
Official Court Business

ROOM E119
Before MASTER YOXALL
At half past 10
Jarman v East Sussex County Council

At 2 o'clock
Janakejah v Oxford University Hospitals NHS Foundation Trust & Other

ROOM E116
Before MASTER EASTMAN
At 11 o'clock
Chaplin v W Richardson and Co Ltd

At half past 11
Wooding v Civil Aviation Authority & Others

At 12 o'clock
Smith v Great Gransden Trading Ltd

At 2 o'clock
Then & Others v Portsmouth Hospitals NHS Trust

ROOM E117
Before MASTER McCLOUD
At half past 10
Not sitting

At 2 o'clock
Not sitting

ROOM E112
Before MASTER COOK

CLANCY DOCWRA LIMITED
WALSH Daniel

CLONM

TEI
Thi
ple Court 5 - sitting at 10:00 am

BEFORE: THE HONOURABLE MR JUSTICE GOOSE (6A)

10:00

Trial (Part Heard)

T20187148

BASHIR Samira
KHAN Gazi
MOODY Lloyd
RASHID Shahid

CLONM

01AB1711414

Order made under Contempt of Court Act 1981

Court 6 - sitting at 10:00 am

COURT NOT SITTING

Court 7 - sitting at 10:00 am

COURT NOT SITTING

Court 8 - sitting at 09:30 am

BEFORE: HIS HONOUR JUDGE HEHIR (8)

09:30

Trial (Part Heard)

T20180354 LATVYTE (AKA RASA ZAMLAUSKAITE) Ona

CLONM

05OL4917216

LINKED TO:

09:30

T20187141 JANKYS Deividas
PAVLIUKOVAS Darius

CLONM

05OL4917216

LINKED TO:

09:30

T20187173 ZAMBLALISKITE Ieva

CLONM

05OL4917216

LINKED TO:

09:30

T20187200 DUDAREVA (AKA JANA DOBROVOLSKIENE) Jana

CLONM

05OL4917216

LINKED TO:

09:30

T20187240 MOCKEVICIUS (AKA VAIDUS MOCKUS) Vaidas

CLONM

10:00 am

For Pre-Trial Review

T20170676 CUMMING Paul J
PRICE Graham
SANDERSON Erland
NOVAKOVIC Momicilo

CLONM

[국민참여재판 교육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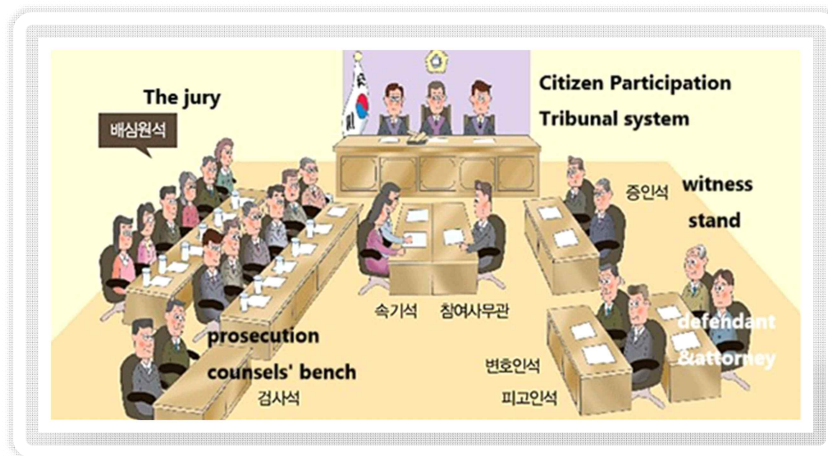
by LAWICATION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위주로 하여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상한 교육자료 입니다.

▶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기본지식: 하나부터 여섯까지 알아보기

Q1) 국민참여재판이란?

A1)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발된 배심원들이 형사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Q2) 배심원의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2)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해당 지방법원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이 때, 법률상에서 규정하는 배심원으로서의 결격사유와 직업 등으로 인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배심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소정의 여비가 지급되며,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서 정한 선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Q3)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재판들은 어떤 경우인가요?

A3) 위 제도의 적용을 받는 재판들은 형사 합의부 관할 사건들입니다. 단, 이때에도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 경우 제도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Q4)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4)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수는 일반적으로 사건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등으로 위중한 경우 9명입니다. 그 밖의 사건은 보통 7명이 참여하되, 피고인 혹은 변호인이 공소 사실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미 인정한 경우에는 5명으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명 이내에서 예비 배심원을 둘 수도 있습니다.

Q5)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재판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5) 재판 절차는 대략 15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 배심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재판장의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에 대한 최초 설명,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최종 설명, 배심원의 평의 및 평결, 양형에 관한 토의, 판결 선고 등의 순서가 있습니다.

Q6) 배심원의 평결은 어떠한 효력을 가지나요?

A6) 배심원이 내리는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결정 내용은 권고적 효력만을 지닐 뿐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의 배심원제도와 결정적 차이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별개로 독자적인 판결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선고를 판사가 내릴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함께 평결과 다른 선고를 내린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국민참여재판과 나 그리고 우리 사회

Q1) 내가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나요?

A1)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원을 통해 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사법 영역에 있어서의 국민 주권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재판과 판결에 있어서의 영향력 행사가 소수 특정 집단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권력 집단을 견제하고 효과적으로 감시하며 보다 직접적인 형태로 사법 영역에의 주권 실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Q2) 법을 잘 모르는 내가 배심원을 해도 될까요?

A2) 물론입니다. 배심원의 역할은 법을 심도 있게 공부하여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심제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취지, 가장 큰 목적은 일반인들의 가장 일반적인 생각에 대한 존중과 이를 사법 영역에 있어 우선시하고자 함입니다. 그렇기에 배심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생각 그리고 법 감정을 대변하여 사회의 일반적인 정의를 구현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Q3) 배심원 제도를 형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제한하여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3)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배심제 혹은 참심제와 같이 사법 영역에의 국민 참여를 도모하는 다양한 국가들에서 배심원의 개입 정도를 일부 재판에 국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심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형사 사건의 경우 민사 사건보다 일반적인 국민의 일반적인 생각과 법 감정이 개입하여 판단하기가 훨씬 상식적이고 보다 간단하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민사사건의 경우 보편적인 대중

의 법 감정 혹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일관되게 판단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첨예한 이해관계와 법적관계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심제도는 특정 경우에 제한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 올바른 배심원, 올바른 국민이 되기 위하여

Q1) 그렇다면 내가 올바른 배심원과 국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1) 국민 주권과 의식의 성장을 도모하는 바람직한 배심원 그리고 국민이 되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법 교육에 대한 관심이 선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가도록 자리 잡고 있는 법에 대해 이 사회의 주인인 내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잘 알고 있는 것,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법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함양하고 내가 나를 지키고 살아가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능동적인 국민의 자세일 것입니다.

Q2)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주의해야 할 유의사항들이 있을까요?

A2)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재판에 참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배심원 간 혹은 다른 누구와도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없으며, 평의 절차 이전까지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평의, 평결 그리고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와 각 배심원들의 의견 등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공정한 배심원으로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Q3)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A2)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자료실에 접속하면, 국민참여재판에 이해를 돕는 다양한 법적 정보 외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홍보하기 위한 공익 TV 광고와 국민참여재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웹툰들을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홈페이지에는 배심원 안내 자료 및 배심원 안내 비디오 등이 있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들 또한 배심원의 역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Q4) 국민참여재판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기회는 없을까요?

A3)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참여하는 방법 외에도 자유로운 법원 재판 방청 혹은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제도를 통해 체험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림자배심제도 (Shadow Jury System)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과 는 별도로 구성되어 재판 전 과정을 참관 후에 유무죄와 관련한 평의, 평결 그리고 양형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러한 평결 내용을 재판 판결에 반영하지 않고, 평결 과정이 자유롭게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배심원들과 다른 점입니다. 이러한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 참여는 대한민국법원 전자 민원 센터 홈페이지에서 매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WHA GLOBAL FRONTIER : LAWCATION BLOG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과 법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7월, 2019의 게시물 표시

[전체 보기](#)

Day 11

7월 30, 2019

Social Court Frankfurt am Main & Local court Frankfurt center

우리 팀은 이후 독일의 법원을 견학하여 독일의 참심제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기 위해 social court frankfurt am Main 과 Local court Frankfurt center를 함께 방문하였다. social court frankfurt am Main 과 Local court Frankfurt center는 우리나라의 지방법원에 해당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틀과 재판의 형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였다. 미리 시간을 알아보고 방문한 덕분에 소...

댓글 쓰기

[자세한 내용 보기](#)

Day 10

7월 30, 2019

괴테 대학은 유럽의 중심부에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대학으로 모든 전통적인 분야에서 학부 및 고급 학위를 제공한다. 괴테 대학의 학생들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세 곳의 주요 캠퍼스 위치에 200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으며,

<LAWCATION> 팀은 Westend 캠퍼스를 방문하였다.

괴테 대학의 법학 강의는 법률교육은 법률훈련에 관한 Hessian Law를 따라 제공된다. 법적 기본에 확고한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간학문적인 강의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특색이 있다. 마찬가지로 6~8학기 동안의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학생들...

댓글 쓰기

[자세한 내용 보기](#)

Day 8

7월 30, 2019

University of Munster의 Michael 교수님과의 인터뷰

<LAWCATION> 팀은 독일로 넘어가 독일의 참심제 및 법교육을 탐사하기 위해 예정되어 있던 Munster University의 Michael Heghmanns 교수님을 찾아뵈었다. Munster University 법학과는 5000여 명의 학생을 둔 독일 최대의 로스쿨 중 하나이다...